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

의안 번호 1700

제출연월일: 2018. 7. .

제 출 자: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사후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공개하 도록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 (안 제1조~ 안제2조)

- 나.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용역 결과물을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 (안 제3조)
- 다. 비공개 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 (안 제4조)
- 라.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 (안 제5조)
-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- 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년 5월 8일 ~ 5월 18일(10일간)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정책기획관 미래전략담당관

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남시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사후 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'정책연구용역'이란 하남시(이하 '시'라 한다)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등에 관한 연구·조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,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.
 - 2. '정책연구관리시스템'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(www.prism.go.kr)을 말한다.
 - 3. '정책연구결과물'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.
- 제3조(공개)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4조(비공개 대상 등) 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 -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·시책·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.

- 제5조(연구결과의 활용) 시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시행규칙) 정책연구결과의 평가방법 및 활용상황 점검 방안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기획예산담당관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담당관 김 정 기
	팀장 직위·성명	혁신기획팀장 박 춘 오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신건상 031-790-5070

관계법령 발췌서

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
제54조(정책연구의 공개)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2.18.〉

- 1.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
- 2.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
- 3.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
- 4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4.2.18., 2017.10.17.〉
- ③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〈신설 2014.2.18.〉